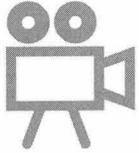


순환골재, 석산채석부지 매립 "문제 많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 산지내 토석만 가능 채석장부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까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갈과 모래 등의 천연 골재가 앞으로 20년 후면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순환골재는 천연 골재를 대체할 소중한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고부가가치용도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06.12.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순환골재 품질기준·품질인증,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순환골재의 활용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순환골재의 사용용도에 대한 현행 법률 규정 미비로 인해 순환골재가 일부 석산채석부지의 매립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I기업의 석산채석부지로서 이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묵인 아래 지난 수년간 순환골재를 채석부지에 불법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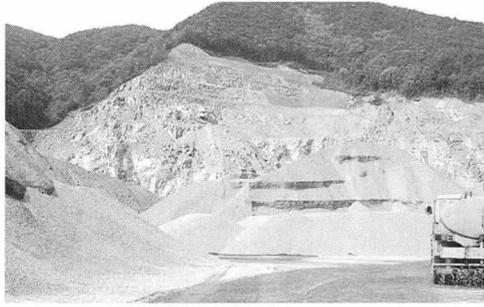
지난 2004년 7월 천연골재 채석부지의 채

석을 종료한 I기업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5-나목의 규정에 의거 석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채석부지의 경우 산지안의 토석을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채석부지의 복구재로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위해 관할 기관인 인천시 서구청으로부터 약 250만㎡의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후 복구재로 사용할 순환골재의 조달을 위해 동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업체인 I환경(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신고업 인·허가 취득)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와 위탁받은 점토점결폐주물사, 도자기조각, 무기성오니, 광재, 폐석재, 폐내화물, 분진 등을 복구용으로 전량 매립 해 왔다.

뿐만 아니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불법매립하거나 현장 외에서 폐기물을 불법반입하여 이를 매립하는 등 복구과정에서 불법·편법처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건설자원협회와 KBS는 공동 취재를 통해 관할 기관인 인천서구청의 반환경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자원의 낭비와





2차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인천서구청은 “순환골재의 석산복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부자원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환경부 역시 관련 법률에서 석산복구용도에 ‘순환골재’ 사용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만 피력하였다.

또한 동 복구지의 매립용으로 폐기물이 불법매립되고 있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인천서구청은 “정기적인 지도점검 결과 불법행위에 대한 징후는 없었으며, 매립용으로 사용된 순환골재의 시험성적서 상에서도 처리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 채석부지에는 중간처리되지 않은 폐기물과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사업장폐기물이 직매립되고 있었으며, 인천서구청이 주장하는 시험성적서의 경우도 I환경이 시험분석기관에 임의로 의뢰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순환골재를 석산복구재로 사용됨으로써 자원의 사장은 물론 폐기물의 불법매립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부족을 주장하며 이를 묵인하고 있는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위로 순환골재가 때 아닌 수난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정부정책방향에 역행하는 순환골재의 석산복구용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대응을 계속할 예정이며, 법률을 개정하고 순환골재가 고급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법률검토 - 산지관리법>

· 산지관리법 제2조

- 3. “석재”라 함은 산지안의 토석 중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 4. “토사”라 함은 산지안의 토석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동법 시행령 '별표8, 채석허가 및 토사 채취 허가기준' 제5호 나목
- '지하로 채석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퇴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